

애견 동숙 규정 준수 동의서 및 주의 사항

-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 한해 보호자의 동행이 필수입니다.
- 반려견의 **배변은 직접 처리**해 주시고 항상 반려견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반려견의 배설물이 침실, 욕실 등을 포함한 객실 내부에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특수 청소비 KRW 100,000의 비용이 청구됩니다.**
 - * 동물보호법 제16조(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 등) 제3항 규정에 의거함.
- 반려견의 체중은 **10kg 미만**이어야 합니다. 단,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은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객실당 1마리의 반려견에 한하여 입장 가능하며, 추가 **1마리당 KRW 30,000의 비용이 청구**됩니다.
객실당 **최대 수용 가능 반려견은 2마리**입니다.
- 엘리베이터 및 호텔 내 이동 시에는 애견 이동 가방 또는 유모차를 이용해야 합니다.
- 호텔 외부에서 이동 시에는 반드시 **리드줄을 착용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반려견의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장 제한 및 퇴실 요청**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반려견을 객실 내에 홀로 두어서는 안 되며, 방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**호텔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**
- 호텔은 반려견과의 투숙으로 인한 **기물파손, 배설물에 의한 오염 및 냄새** 등으로 인한 청소 및 보수에 대해 **체크아웃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**할 수 있습니다.
- 입질, 심한 짖음, 심한 공격성, 마운팅이 있는 애견은 입장 제한 및 퇴실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[대인 배상]

- 반려견 견주는 반려견으로 인하여 제3자(호텔인테리어고원주 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등 포함)의 신체, 재산(반려동물 포함)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“회사”를 면책하고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.
단, 반려견 견주 및 반려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반려견 견주는 손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“회사”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하는 경우 “회사”에 발생한 손실, 요구, 피해, 책임, 경비 및 비용(대리인/변호사 수수료 및 소송 비용 포함)에 대하여 ‘호텔인테리어고원주’를 위해 변상함에 동의한다.
- 반려견을 동반하여 호텔을 이용하는 반려견 견주는, 호텔을 함께 이용하는 반려견 동반 이용자, 반려견 동반 일반 이용자, 호텔인테리어고원주 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등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객실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에 의한 문제 발생시 강제 퇴실 조치, 시설물 훼손의 복구비용 변상,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아래 서명자(견주)가 책임질 것을 동의한다.

[대물 배상]

- 반려견 견주는 반려견의 행위로 인하여 호텔인테리어고원주 내 시설물, 비품 등을 파손, 훼손, 손상, 분실 (이하 “손망실”)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 전부를 현금으로 “회사”에 배상한다.
- 반려견이 객실 내 시설물, 비품 등에 영역 표시로 인하여 얼룩, 냄새 등이 발생함으로써 청소,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청소비, 보수비 등을 퇴실 전까지 “회사”에 지급한다.
- 본 조 제2항의 청소, 보수 등이 불가하여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구매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최초 구매대금의 절반(1/2)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실 전까지 “회사”에 지급한다.

- ※ 상기 언급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, 호텔에서는 환불 없이 퇴실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 드리며, 모든 책임은 고객님의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반려견 동반 운영정책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투숙객 성명: (인/서명)

담당자 성명: (인/서명)